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제12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

2020. 11. 24(화) 16:0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 제12회 정기 이사회

□ 일 시 : 2020년 11월 24일(화) 16:00

□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함.

□ 재적이사 : 총 10명

□ 출석이사 : 총 6명

□ 출석감사 : 총 1명

이사장 직무대행이 제12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사무국장이 제12회 정기이사회 의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설명하고,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 통하여 주요 보고사항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2020년 하반기 재단 운영보고
  3. 장학사업 추진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 직무대행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 제212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이 제212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현재 서울시의 2021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2020년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재단의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함을 설명하다. 최종 확정된 2021년 사업계획은 2020년 결산과 함께 내년 2월 이사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사무국장이 총괄 예산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다. 2021년 세입총계는 10,976,991천원이며, 세출총계는 10,976,991천원이라고 말하다. 세입 세부내역은 서울시

출연금 10,100,254천원, 기부금수입 278,000천원, 전기이월금 338,737천원, 이자소득 등 260,000천원으로 총 10,976,991천원임을 설명하다. 세출 세부내역은 사무국 운영경비 1,077,750천원, 사업비 9,593,241천원, 예비비 및 기타 306,000천원으로 총 10,976,991천원임을 설명하다.

2021년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수업료·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장학금 사업이 일몰되었으며, 2020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총 18개 장학사업, 4,756명, 9,287백만원(정보화, 홍보, 성장지원사업을 제외한 순수 장학금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각각의 장학사업의 취지와 지원 대상, 지원 인원, 지원금액 및 개별 사업 예산과 재단 운영, 정보화, 홍보, 장학생 성장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에 대해 참석 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다.

OOO 이사가 2021년 대학 등록금 지원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사이버대학 지원여부와 지원대상 연령 제한이 있는지 질문하다.

사무국장이 현재 사이버대학도 포함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연령 제한 없이 재학생일 경우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고연령층 또는 전업의 직장이 있는 경우도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다.

사무국장이 소득이 있더라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분위가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고, 재단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하면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하다.

OOO 이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이버대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일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이버대학으로 많이 진학하고 있으므로, 향후 장학사업 추진시 이에 대한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무국장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12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13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이 안건 제213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필기시험 전형 추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지급 개선 방안을 설명하다.

제11조(채용방법)에서 필기시험이 추가됨과 제11조의2(시험위원 임명)에서 시험위원의 자격 중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일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설명하다.

제38조(명예퇴직) 및 제39조(조기퇴직)에서 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취업규칙 신고 조건에 맞게 2회의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50% 이상 동의를 구하였음을 설명하다.

OOO 이사가 재단의 조직 규모나 채용 프로세스를 봤을 때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에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며, 형식적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공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질문하다.

사무국장이 최근 공공기관 채용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채용시 필기시험을 필수로 시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추세이고, 서울시에서도 급변 채용과 관련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서울시 21개 투자출연기관이 모두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점수를 통해 우수한 지원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재단의 규모와 채용 상황에 맞는 필기시험을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13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14호 재무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이 안건 제214호 재무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상위규정 개정에 따라 재단 재무회계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제19조(결산서의 작성)에서 2항 3호의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로 개정하고, 제38조(계약서의 작성 생략) 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하고, 3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과 지출결의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이어 제50조(수의계약집행기준)에서 1~15호로 상세히 나열된 수의계약 집행 기준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수의계약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51조(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에서 재공고 입찰결과 1인 뿐인 경우에는 심의 및 점수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70조(지체상금)에서 지체상금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개정하고, 제79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조항 제목을 『증빙서류의 보관 등』으로 개정하고, 전자적 방식의 증빙서류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법인카드 회계·지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89조(회계업무서식준용) 및 제90조(회계규정 준용)에서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용어를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OOO 감사가 현재 재단의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변경하는 근거와 재단 규모 및 사업에 비추어 봤을 때 3천만원 이하의 사업 진행시 계약서를 생략하고 있는지 질문하다.

사무국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됨을 설명하고, 현행 3천만원 또는 그 이하의 사업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향후 재단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고려하여 상위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14호 재무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15호 여비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이 안건 제215호 여비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여비규정의 다양성 및 과도 또는 과소지급의 배제를 위하여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및 『서울시 국외업무여비 절감 기준 개선안』에 따라 여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제9조(지급기준)에서 <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를 『서울시국외업무여비절감기준』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제16조(준비금)에서 국외출장자에게 지급하는 준비금의 종류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로 개정하고,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16조의1 조문을 신설하고, 제17조(체제비)에서 체제비 감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15호 여비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11월 24일